

# Business Focus

## 2025년 국내 디지털금융 주요 이슈

March 2025

—  
삼정KPMG 경제연구원



# Contacts

## 삼정KPMG 경제연구원

최연경

책임연구원

E [yeonkyungchoi@kr.kpmg.com](mailto:yeonkyungchoi@kr.kpmg.com)

노승환

책임연구원

E [seunghwanroh@kr.kpmg.com](mailto:seunghwanroh@kr.kpmg.com)

김규림

상무

E [gyulimkim@kr.kpmg.com](mailto:gyulimkim@kr.kpmg.com)

이시언

선임연구원

E [seanlee7@kr.kpmg.com](mailto:seanlee7@kr.kpmg.com)

곽호경

수석연구원

E [hkwak3@kr.kpmg.com](mailto:hkwak3@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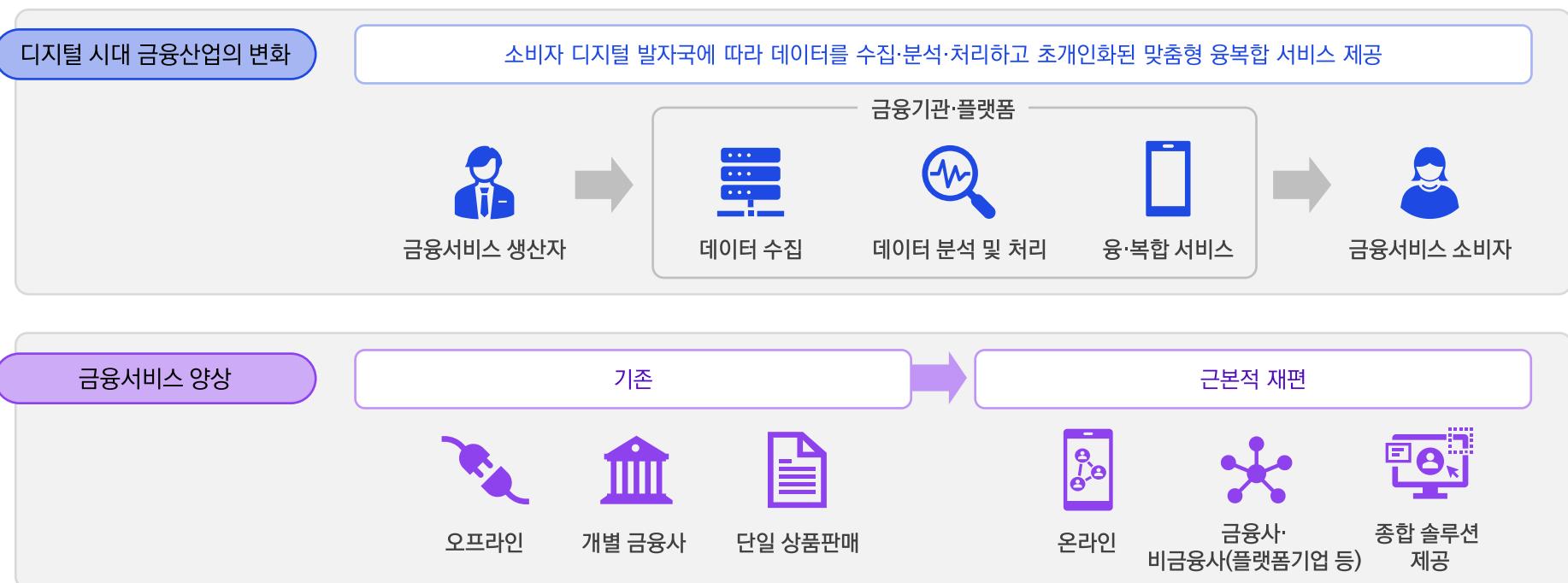
I.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확대	2
II.	2025년 눈여겨볼 디지털금융 7대 이슈	10
III.	결론 및 시사점	37

## I.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확대

#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재편

스마트폰 대중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한편, 이로 인해 금융산업의 구조와 서비스 방식, 플레이어 등이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

## 디지털 시대 금융산업과 금융서비스의 변화



Source: 금융위원회,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확대

# 기술 혁신으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와 주요 플레이어의 경쟁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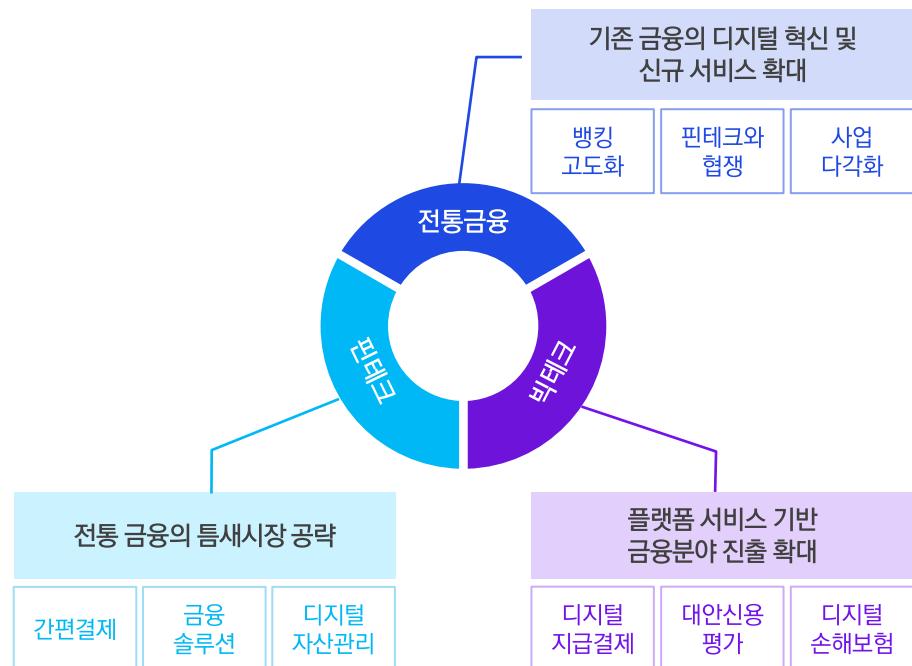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와 같은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이를 도입함에 따라 금융의 디지털화와 비대면화, 플랫폼화가 심화. 기존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을 비롯하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핀테크 창업 활성화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이 본격화

## 기술 혁신 가속화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



Source: 한국금융연구원(2024.7.8), '미래의 거대 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 세미나 발표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기술 발전과 금융산업의 변화: 금융산업 대응 과제 모색'

## 디지털금융의 경쟁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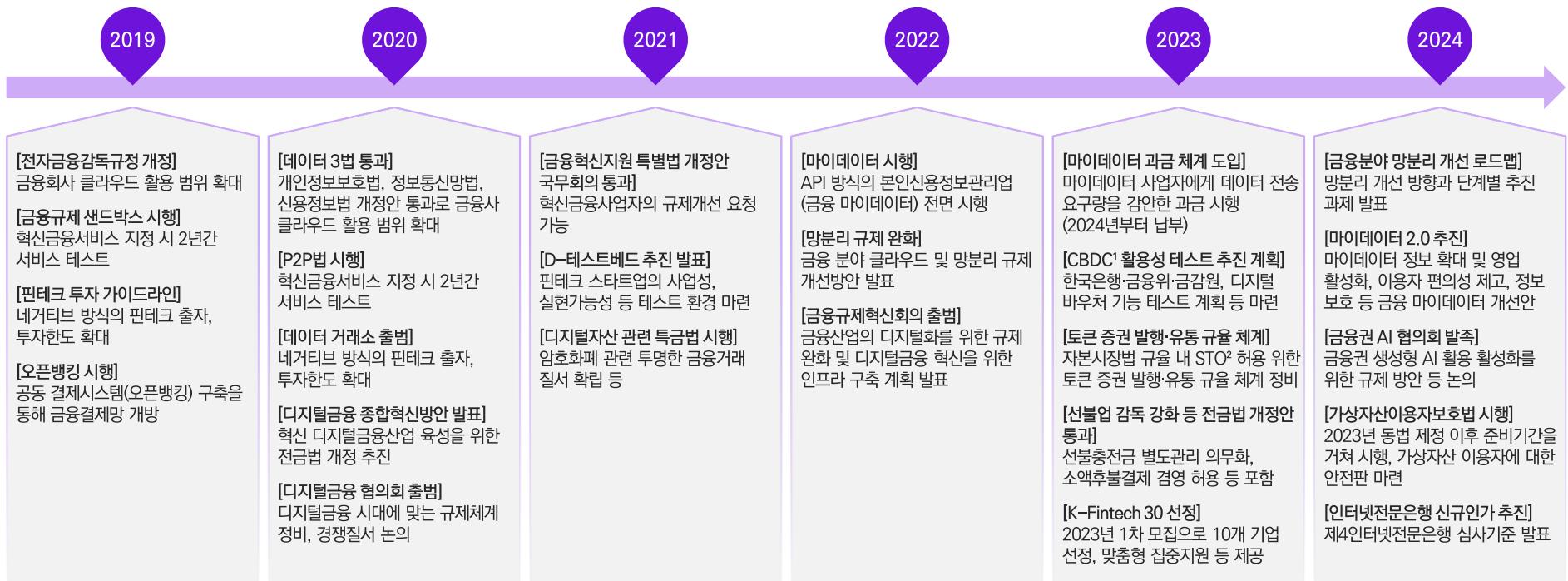
Source: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3.6.8), '디지털의 거대한 흐름, 디지털금융'

## I.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확대

# 디지털금융의 발전을 위한 규제 정비

그간 디지털금융으로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옴. 금융규제 샌드박스, 오픈뱅킹부터 마이데이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에 이르기까지 혁신 촉진과 新금융업 제도화를 도모

### 국내 디지털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규제 정비 타임라인



Sour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종합하여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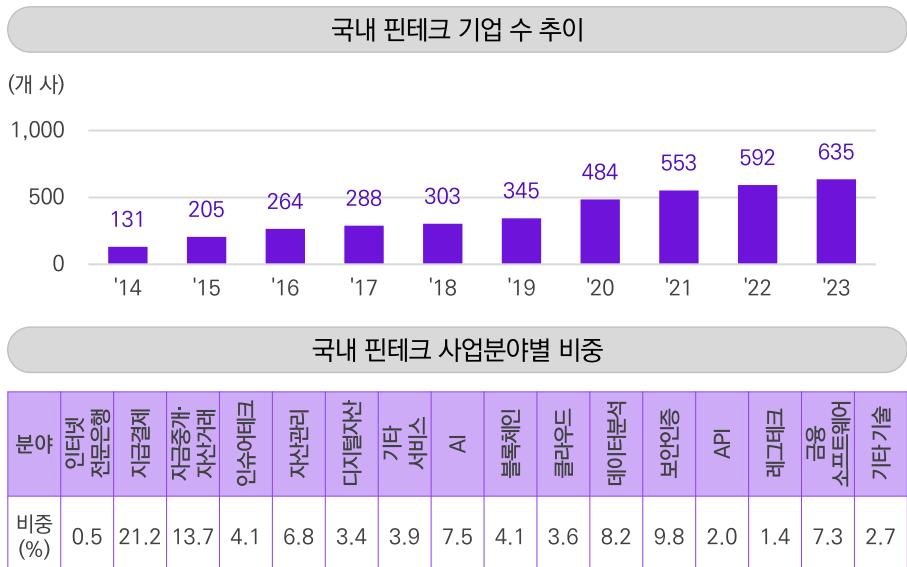
Note 1: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 Note 2: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Offering, STO)

## I.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확대

# 핀테크의 빠른 발전·금융 플랫폼화 달성 … 질적 성장 필요성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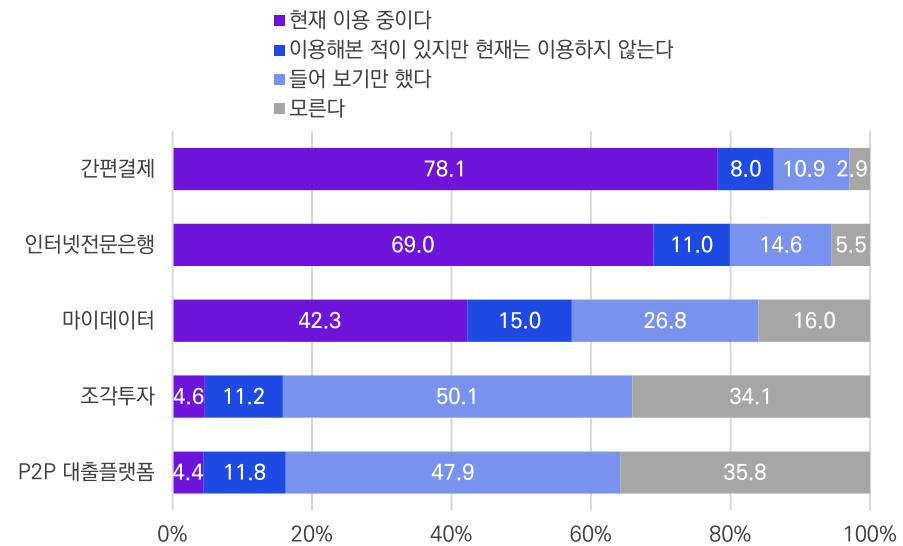
정책적 지원과 자생적 발전 등이 어우러지며 국내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 수 증가, 빅테크 등 신규사업자 진출 등 양적 성장을 달성. 다만 최근 핀테크 생태계 다양화, 비즈니스 모델 차별화 등 질적 성장에 대한 필요성이 점증

### 국내 핀테크 기업 수 및 사업분야별 비중



- 국내 핀테크 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분야는 지급결제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 고착화

### 2023 국내 핀테크 이용현황 조사 결과



-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되고 간편결제, 인터넷전문은행 중심으로 핀테크 서비스 활용성이 높으나, 그 밖의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다양성이나 활용도는 낮음

Source: 한국핀테크지원센터(2024.12), '2023 핀테크 산업현황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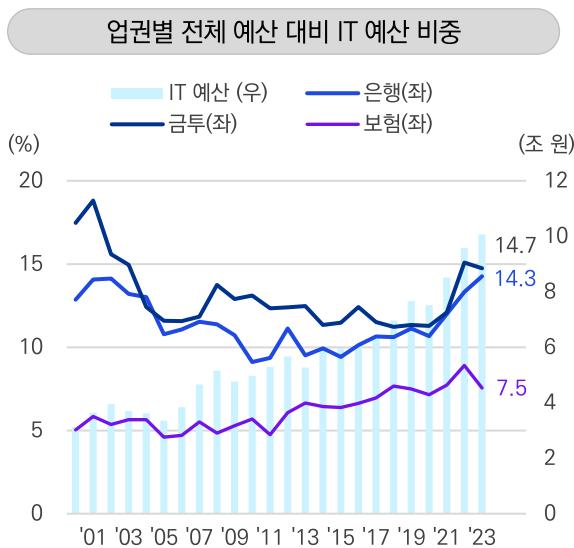
Source: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2023.12.18), '2023 핀테크 이용현황 조사 결과'

## I.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확대

#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 가운데 선택과 집중 및 경쟁력 실질화 등 고민 필요

국내 금융권 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예산과 인력 규모는 증가세로 2023년 IT 예산 규모는 10조 원, IT 인력은 13만 명에 육박. 반면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국내 금융사 디지털 전환 수준에 대한 재점검 및 디지털 전환의 중장기적 플랜의 재정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

## 국내 금융사 IT 예산·직원 비중 추이



- ‘23년 금융업 총 IT예산 규모는 10조 원, IT인력은 13,582명으로 ’00년 대비 각각 3.2배, 1.8배 증가
- 금융업 전체 예산 대비 IT 예산(인건비 포함) 비중은 업권별 편차가 존재하나 은행·증권업 중심으로 2010년 이후 상승세
- 금융업 전체 직원 대비 IT 인력 비중은 2010년 이후 상승세로 업권에 관계없이 2023년 말 기준 7% 미만을 기록

Source: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2024.12.29), ‘2022-23년도 금융정보화 추진 현황’

Note: 전체는 카드사 포함

## 국내외 은행 디지털 전환 성숙 지수 순위

순위	금융사명	국가	점수
1	HSBC	영국	92
2	씨티(Citi)	미국	91
3	앨리(Ally)	미국	91
4	레볼루트(Revolut)	영국	90
5	중국신탁상업은행	중국	90
6	BofA	미국	87
7	스탈링뱅크(Starling Bank)	영국	86
8	T-뱅크(舊 Tinkoff Bank)	러시아	86
9	웰스파고(Wells Fargo)	미국	85
10	모닉스(MONIX)	태국	85
42	KB국민은행	한국	79
53	신한은행	한국	77

- 자본 기준 글로벌 상위 100개 은행에 국내 은행 그룹 5개 사 포함되나, 디지털 전환 성숙 지수 100대 순위 내에는 2개 사에 그침

Source: The Digital Banker(2023), ‘Top 100 Banks for Digital CX – The DCX Maturity Index’

## I.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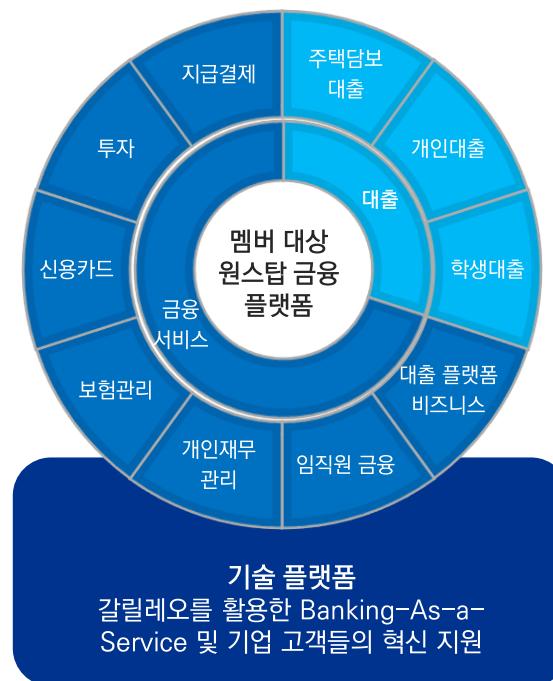
# [참고] SoFi, 안정적 수익과 기술 기반 핀테크 기업의 도약

미국 핀테크 기업 SoFi(2011년 설립)는 현재 ① 대출, ② 카드/보험 등 원스탑 디지털금융 플랫폼 구현 및, ③ B2B API 기술 플랫폼을 통한 수익 다각화 및 사업 확장 모색. 순매출 지속 증가세 가운데 '24년 말 기준 개인고객(1,010만 명)과 기술 플랫폼 계정(1,680만 개) 등에 기반해 연간 기준 흑자 기록하며 기업가치를 인정받음

### SoFi 사업 확장 및 전략

금융서비스 서비스 라인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2P 대출 플랫폼에서 시작('11년), 희자금 대출 채용자 상품('12년), 주택담보대출('14년), 신용대출('15년), 자동차담보대출('21년) 등</li> <li>주식 거래('19년), 상장지수펀드(ETF) 운용('19년)</li> <li>직불카드('20년), 신용카드('21년)</li> </ul>
B2B 핀테크 서비스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릴레오 인수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 결제 및 뱅킹 솔루션 제공</li> </ul>
전략적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바일 뱅킹업체 젠벤스(zenbenx) 인수('17년)</li> <li>홍콩 투자앱 8증권(8 Securities) 인수('20년)</li> <li>'핀테크 업계의 아마존웹서비스'로 불리는 갈릴레오(Galileo) 인수('20년)</li> <li>클라우드 기술 솔루션 테크니시스(Technisys) 인수('22년)</li> <li>은행업 면허를 위한 조석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은행 골든 퍼시픽 뱅코프(Golden Pacific Bancorp) 인수('22년)</li> <li>클라우드 기반 코어 뱅킹 시스템 기업 Technisys 인수('22년)</li> <li>원덤 캐피탈 모기지(Wyndham Capital Mortgage) 인수('23년)</li> </ul>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 1월 통화감독국으로부터 전국 은행(National Bank) 승인</li> </ul>
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 12월 특수목적 인수회사(SPAC) 합병을 통해 뉴욕증권거래소 상장</li> </ul>

### SoFi 비즈니스 라인



### SoFi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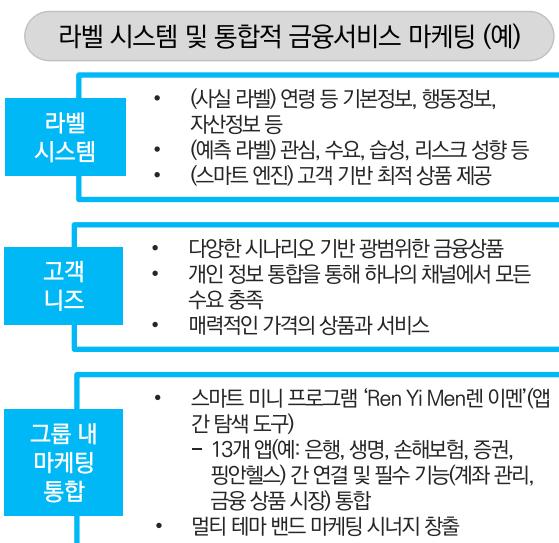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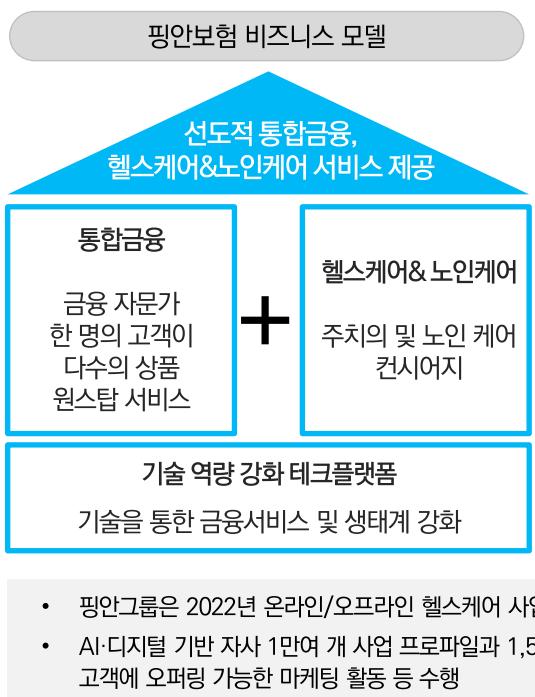
Source: SoFi.com, SoFi(2025.01) "Investor Presentation", 언론보도 종합

## I.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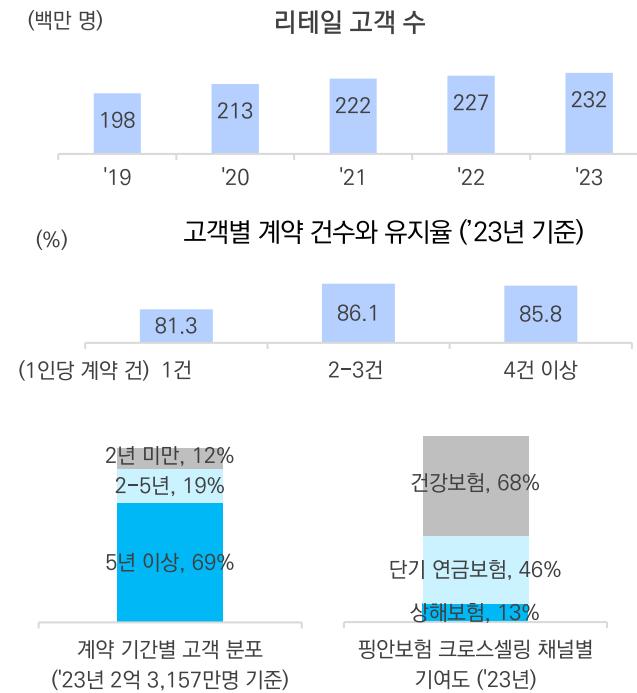
# [참고] 핑안보험,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전략으로 재도약 모색

중국 핑안보험은 AI·디지털 기반 자사 상품과 고객 프로파일에 대한 라벨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별 맞춤형 상품 추천 등을 도모하며 금융-헬스케어 및 노인케어 플랫폼 내 고객 환류에 방점을 두고 있음. 이에 리테일 고객 수 증가 및 고객의 가입 상품 증가와 고객 유지 등의 성과를 창출하며 재도약을 모색

### 핑안보험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



### 핑안그룹 주요 성과



Source: PingAn(2023) "Annual Report", PingAn(2023.11) "2023 Investor Day".

Source: PingAn(2023) "Annual Report"

# Contents

I.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확대	2
II.	2025년 눈여겨볼 디지털금융 주요 이슈	10
III.	결론 및 시사점	37

## 변화의 한 가운데 선 디지털금융, 눈여겨볼 이슈는?

디지털금융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혁신 동력 필요성과 이전에 없던 리스크도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이나 기업 대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본 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국내 정책과 관련 동향을 기반으로 2025년 동안 주목해야 할 디지털금융의 주요 이슈를 선별하여 제시함

### 2025년 주목해야 할 디지털금융의 7가지 이슈

1	2	3	4	5	6	7
 금융권 망분리 개선 로드맵	 티메프 사태에 따른 새로운 지급결제 관리 필요성	 제4인터넷전문은행, 금융 지형 변화의 핵심이 될 것인가	 금융 마이데이터 2.0, 질적 성장·차별화 통한 경쟁력 제고	 다시 한 번 기지개 켜는 디지털 자산	 혁신의 통로로 자리매김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핀테크 기업의 약진 ... 성과 창출과 해외진출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추진</li> <li>금융권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aaS) 전환, 생성형 AI 활용 개선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기업이 결제대행 역할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커머스 정산 구조 개선안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11월 신규인가 심사기준·절차 공개</li> <li>2025년 1월 현재 6개의 컨소시엄이 형성, 이르면 2025년 6월 출범 계획 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4월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및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li> <li>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관련 영업 활성화 등 기대 ... 수익성 확보 관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상자산위원회 개최하여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 논의 시작</li> <li>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관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주목할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성형 AI 기반 금융권 서비스, CBDC 실거래 테스트 등 금융권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활용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핀테크 기업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기업공개(IPO) 도전 본격화</li> <li>인터넷전문은행의 약진 또한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li> </ul>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참고] 금융산업 내 디지털금융 7가지 이슈의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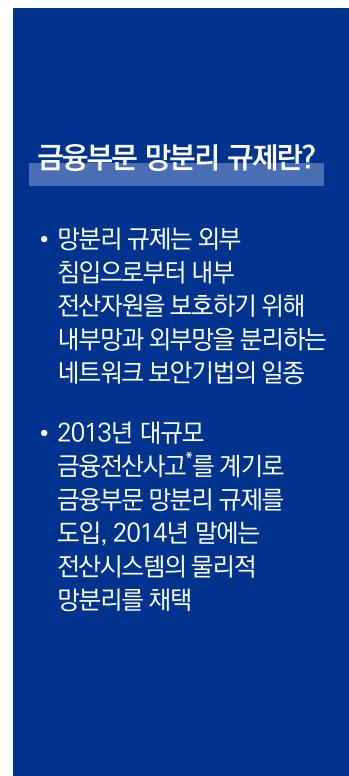
### 주요 7가지 이슈와 금융산업 구조와의 연관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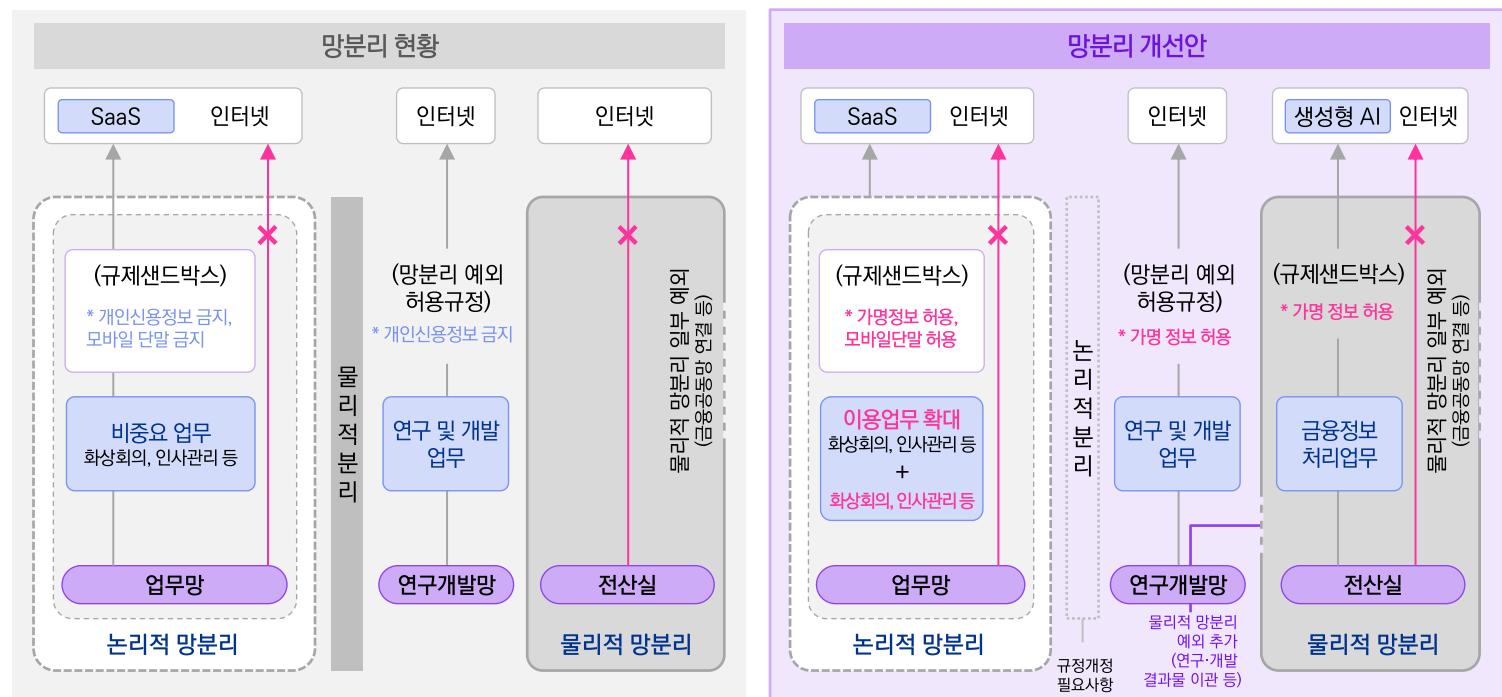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ISSUE 1. 금융권 망분리 개선 로드맵 (1/3)

2024년 8월 13일 금융당국은 망분리로 인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상 비효율, 신기술 활용 저해, 연구·개발 제약 등을 보완하고자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 동 로드맵은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금융 보안 법 마련 등 금융 보안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함



### 금융부문 망분리 개선 추진 과제 종합 구성도



Source: 금융위원회(2024.8.13),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금융위원회(2024.4.12), '변화된 IT환경의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위한 「금융부문 망분리 T/F」 1차 회의 개최'

Note: \*2013년 3월 20일 국내 주요 은행과 방송사의 전산망이 일시에 마비된 전산 대란

# ISSUE 1. 금융권 망분리 개선 로드맵 (2/3)

금융권 망분리 규제는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로드맵 1단계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생성형 AI 활용 허용,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aaS) 이용 범위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연구·개발 환경을 적극 개선하고자 함. 이처럼 점진적 규제 완화를 통해 보안 거버넌스 강화, 자율 보안 역량 제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 향유 방향을 모색할 예정

##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안 배경

구분	주요 내용
검토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권 망분리 도입 후 10년 이상 경과하면서 다양한 이유로 규제개선 요청이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망분리로 인한 업무 비효율</li> <li>② 연구·개발 및 신기술(AI 등) 활용 애로</li> <li>③ 해외 규제와의 괴리 등</li> </ul> </li> </ul>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차례 규제개선이 있었으나, 시장의 기대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2019년 1월) 클라우드 이용 시 물리적 망분리 예외 허용, 단 소프트웨어 형태 클라우드(SaaS)* 이용 불가</li> <li>② (2022년 11월) '연구·개발 망분리 예외' 허용, 다만 제한조건으로 인해 활용 미흡</li> <li>③ (2023년 9월) 규제샌드박스로 업무망 SaaS 이용을 허용했으나, 부가조건으로 활용 제한</li> </ul> </li> </ul>
개선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망분리 규제 고수 시, 급격하게 변화하는 IT 환경에서 생존하기 어려우며, 금융보안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프트웨어 시장이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SaaS로 빠르게 전환되고 특히 AI,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SaaS로 제공되어 망분리 규제 하에서 이용이 제한적</li> <li>② 클라우드 환경하에서 망분리는 오히려 보안성 약화 요인으로도 작용</li> </ul> </li> </ul>

Source: 금융위원회(2024.8.13),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Note: \*SaaS(Software-as-a-Service)

##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단계별 세부 추진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b>① 생성형 AI 허용(규제샌드박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성형 AI를 활용, 가명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허용</li> </ul>	<b>④ 1단계까지의 규제특례 정규 제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샌드박스로 성과 검증된 과제 → 규정 개정 등 제도화 추진</li> </ul>	<b>⑦ 「디지털금융보안법(가칭)」 제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용역, 공청회 거쳐 연내 마련 추진</li> <li>- '자율보안-결과책임'의 보안체계 구축(목표·원칙 중심으로 규제 전환)</li> </ul>
<b>② 클라우드 이용 확대(규제샌드박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명정보 허용 및 고객관리, 업무자동화 등 추가 허용 등</li> </ul>	<b>⑤ 규제특례 확대·고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신용정보 처리 등 리스크 높은 업무 → 강화된 보안대책 전제로 추가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권 책임 강화(배상책임 강화, 실효성 있는 과징금 등, CISO* 권한 확대 및 CEO 이사회 보고 의무)</li> </ul>
<b>③ 연구·개발분야 망분리 개선(감독규정 개정)</b>	<b>⑥ 제3자 리스크 관리강화 등을 위한 정보처리 위탁제도 정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당국의 점검·이행명령 등 금융권 보안수준 제고 뒷받침</li> </ul>

Source: 금융위원회(2024.8.13),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Note: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 ISSUE 1. 금융권 망분리 개선 로드맵 (3/3)

금융분야 단계적 망분리 개선에 따라 금융산업 내 AI, 클라우드 기술 활용이 확대되며 업무 생산성 향상, 업무 편의 증가 등 전반적인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혁신 서비스 출시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편익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망분리 규제로 시장 진입·확장에 제약이 있던 클라우드 등 관련 업계는 새로운 기회를 염볼 수 있을 전망

###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으로 인한 기대 효과



금융산업

- AI 및 SaaS 기반 업무 자동화, ERP<sup>1</sup>(인사·회계 등) 등 도입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
- 연구·개발 업무 편의 증가, IT 개발 직원 재택근무 허용 등 근무 환경 개선
  - 금융회사 등의 IT 개발 활성화, 금융권 우수 IT 인력 유치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음
- AI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산업적 연구 및 통계 작성 등 금융 데이터 활용 증가



금융소비자

- 혁신적 新상품 개발로 금융소비자 기회·편의 확대
  - 예) AI 기반 데이터 분석·예측 및 신용평가 고도화 → 특화 보험, 중금리 대출상품 개발 등 사각지대 해소
- 고객 행동분석, 고객관계관리(CRM)<sup>2</sup> 고도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의사결정 지원
  - 예) AI로 자산·투자이력·소비행태 등 분석 → 고객 특성별 포트폴리오 및 투자 결정 추천
- 생성형 AI 기반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sup>3</sup> 고도화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예) 생성형 AI로 카드 거래 패턴과 피해사례 등 학습 → 복잡한 사기시도 탐지



클라우드·  
보안업계

- 금융권 선진 보안기술 도입 활성화에 따른 IT 보안 산업 발전 효과
-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sup>4</sup>, 공급망 보안 등 보안 신기술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다만 망연계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 기회 축소 가능성 상존
- 물리적 망분리 규정으로 제약이 있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CSP)<sup>5</sup>, SaaS 기업, 매니지드 서비스 기업(MSP)<sup>6</sup> 등은 시장 참여가 확대될 전망

Source: 금융위원회(2024.8.13),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언론보도 종합

Note: 1)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 관리), 2)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3) Fraud Detection System, 4) 조직 네트워크 내·외부에 있는 모든 주체가 신뢰 영역으로 간주되는 조직 내부 네트워크의 자원 또는 데이터에 접근할 때 강한 인증, 정교한 접근 통제 그리고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이용자인지 지속적으로 검증·확인함으로써 위험을 완화하는 새로운 보안 프레임워크, 5) Cloud Service Provider, 6) Managed Service Provider

## ISSUE 2. 티메프 사태에 따른 새로운 지급결제 관리 필요성 (1/3)

2024년 7월 큐텐 계열사인 이커머스 업체 위메프·티몬(이하 티메프)의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가 발생하고 환불 지연 상황으로 이어짐. 이에 2024년 7월 말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 기관에서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와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조치하기 시작

### 티메프 사태 경과

2024년	
7월 중순	<b>대금 미정산 사례 발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메프 입점업체가 대금 미정산 관련 게시물 등재</li> </ul>
7월 22일	<b>판매자→소비자 피해 전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티몬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 및 판매자의 일방적 거래 취소</li> </ul>
7월 24일	<b>환불 지연 사태로 상황 악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제대행사의 위메프·티몬 이탈</li> <li>현장 환불 절차 착수(7월 25~26일)</li> </ul>
7월 29일	<b>위메프·티몬 기업회생 및 자율구조조정(ARS) 신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생법원은 절차진행을 위해 자산 동결(7월 30일), 자율 구조조정 승인(8월 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9월 11일)</li> </ul>
2025년	
1월	<b>위메프·티몬 매각 진행 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권자 관계인 설명회에서 정상화 방안 등 보고(1월 15일)</li> <li>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2025년 상반기 내 매각 종료 가능성</li> </ul>

Sour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종합,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티메프 사태 대응 및 피해기업 지원 현황

티메프 사태 대응 경과	
일자	주요 내용
2024.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장혼란 방지 및 긴급 피해지원 위한 1차 대응방안 발표</li> </ul>
2024.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li> </ul>
2024.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대책 신속집행 및 추가 대응방안 발표</li> </ul>
2024.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티메프 정산지연 피해업체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시작</li> </ul>
2024.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파크쇼핑·AK몰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li> </ul>
2024.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개최</li> </ul>
2024.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렛츠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절차 진행</li> </ul>

### 소진공·중진공·신보–기은<sup>1</sup>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현황<sup>2</sup>

기관	신청		집행	
	건수	액수(억 원)	건수	액수(억 원)
소진공	1,204	405.7	865	300.5
중진공	461	1,544	288	816.2
신보–기은	330	1,302.9	289	951.5
계	1,995	3,252.6	1,442	2,068.2

Source: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종합

Note: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2) 2024년 8월 9일~2024년 10월 21일 기준

## ISSUE 2. 티메프 사태에 따른 새로운 지급결제 관리 필요성 (2/3)

금융위원회는 유통업체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커머스 정산 구조 개선안을 발표. 금융과 융합한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혁신과 규율간 균형을 감안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보완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전망

### 이커머스 관련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 제도개선 방향

- 최근 이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이 증가했으나, 효과적 규율·관리체계 미비. 이에 판매자 보호를 위한 e커머스 행위 규제, 전자상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 추진

구분	현황	개선방향
(1) 정산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 이커머스업체, PG사는 법령상 규정 없이 약관·계약 등에 따라 정산기한을 설정, 자율적으로 판매대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산기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e커머스업체의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li> <li>(대금 별도관리) e커머스업체, PG사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 및 유용 금지</li> </ul>
(2) PG사* 관리·감독 강화	• PG업 진입 기준이 낮으며 경영지도 기준 미충족 시 실효 감독수단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긴전하게 영업가능한 수준으로 인적·물적 요건 강화 등 PG사의 등록요건 및 감독 수단 강화 (전자금융거래법)</li> <li>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 필요성 검토(외국환거래법)</li> </ul>
(3) 상품권 발행업체 규율 강화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발행업체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에 대한 관리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전자금융거래법·개정 및 약관법상 표준약관 반영)</li> </ul>
(4) 우수 이커머스 인센티브 신설 및 판매자 보호조치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산기한이 짧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우수 이커머스 기업 및 우수 이커머스 입점업체에 인센티브 제공</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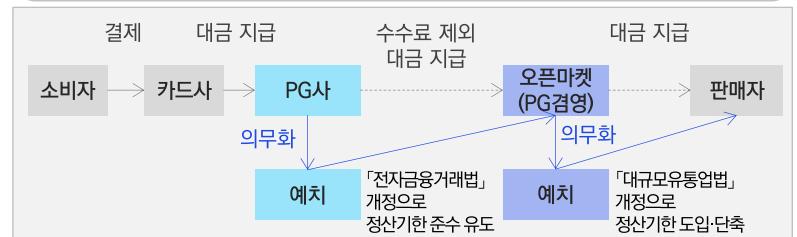
Source: 금융위원회(2024.8.7),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Note: 전자결제대행사(Payment Gateway, PG)

### 정산기한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관련 현황 및 개선안

근거법	규율 대상	정산기한	판매대금 별도관리
대규모 유통업체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유통업자)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 받아 직접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❷ 매장 면적 3,000m<sup>2</sup> 이상 점포 사용</li> </ul> </li> </ul>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커머스업체-추가)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판매자간 거래 증가</li> </ul>	X(→O) 정산기한신규 도입	X(→O)
전자금융 거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G사) 지급결제정보의 송·수신 또는 대가의 정산 대행</li> </ul>	X(→O) 정산기한 준수 유도	X(→O)

### 개선 후 이커머스 정산 구조



## ISSUE 2. 티메프 사태에 따른 새로운 지급결제 관리 필요성 (3/3)

금융위원회는 ①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 ② PG사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PG업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을 발표. 더불어 PG업의 정의 명확화 필요성을 언급하여 향후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의 구체적 내용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며 결제 인프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중요

###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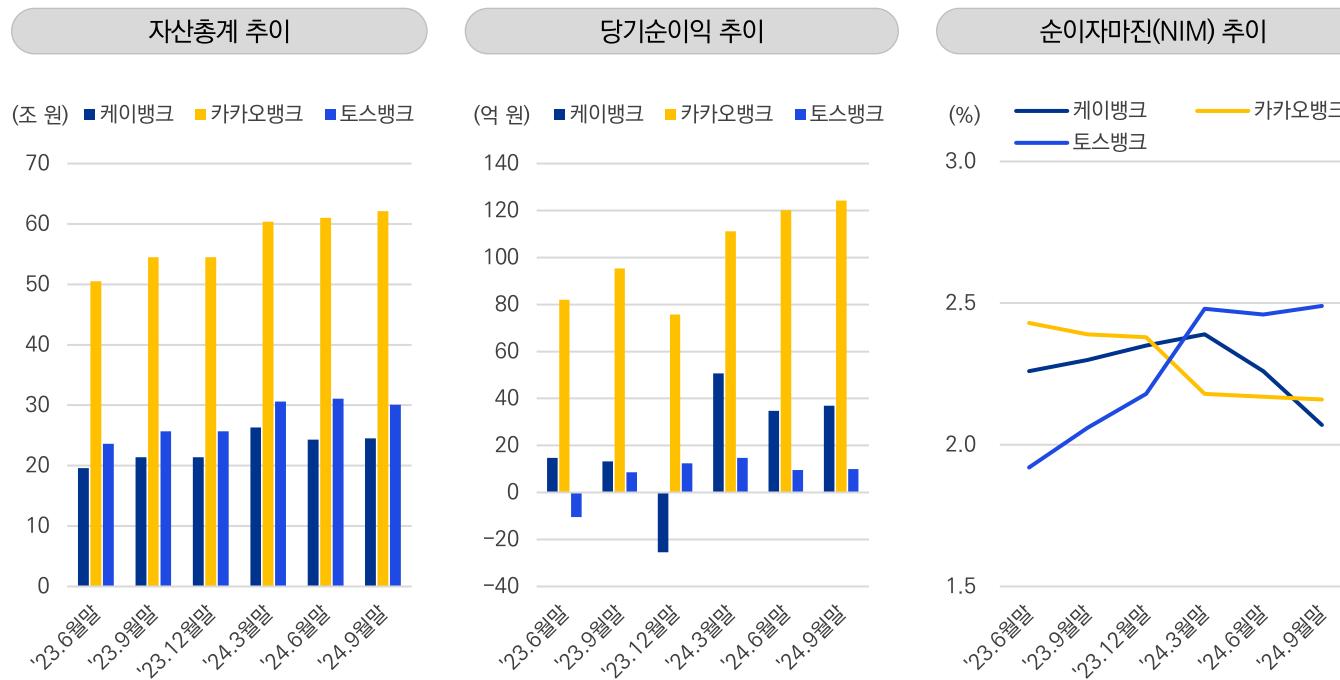
구분	내용	PG업 정의 명확화
<b>1.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b>		
(1) 별도관리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판매자 보호를 위해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탁·지급보증 시 운용범위를 안전자산으로 제한,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은 판매자에게 고지 및 회사 홈페이지 공시</li> <li>규제준수 부담을 고려, 적절한 경과기간 부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G업의 본질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법상 PG업의 정의는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li> <li>자기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 PG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할 필요</li> </ul> </li> </ul>
(2) 정산자금 법적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산자금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정산자금의 양도·담보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G사 파산 시에도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 도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까지 PG에 포함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금정산이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li> <li>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까지 금융규제가 강제될 경우 과잉 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 문제 발생</li> </ul> </li> </ul>
<b>2.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관리·감독 강화</b>		
(1) 진입규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G사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규모를 상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위원회는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 이용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PG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하는 경우는 PG업의 범위에서 배제된다는 견해를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의 구체적 내용과 '타인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것과의 차이점 등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li> </ul> </li> </ul>
(2) 감독 실효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지도기준 및 별도관리의무 미준수 시, ①시정요구 → ②영업정지 → ③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근거 마련</li> </ul>	
(3) 자금유용, 대금 미지급 시 제재·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관리 자산의 정산목적 외 사용 및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시 제재·처벌근거 마련</li> </ul>	

Source: 금융위원회(2024.9.9),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 개선안 발표」, 법률신문(2024.10.16),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ISSUE 3. 제4인터넷전문은행, 금융 지형 변화의 핵심이 될 것인가 (1/4)

2017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상당한 수준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를 확보하며 플랫폼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시중 은행 대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으로 은행권 전반에 대한 소비자 편의성이 증진되었으나 자금조달 안정성 확보,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제고 등을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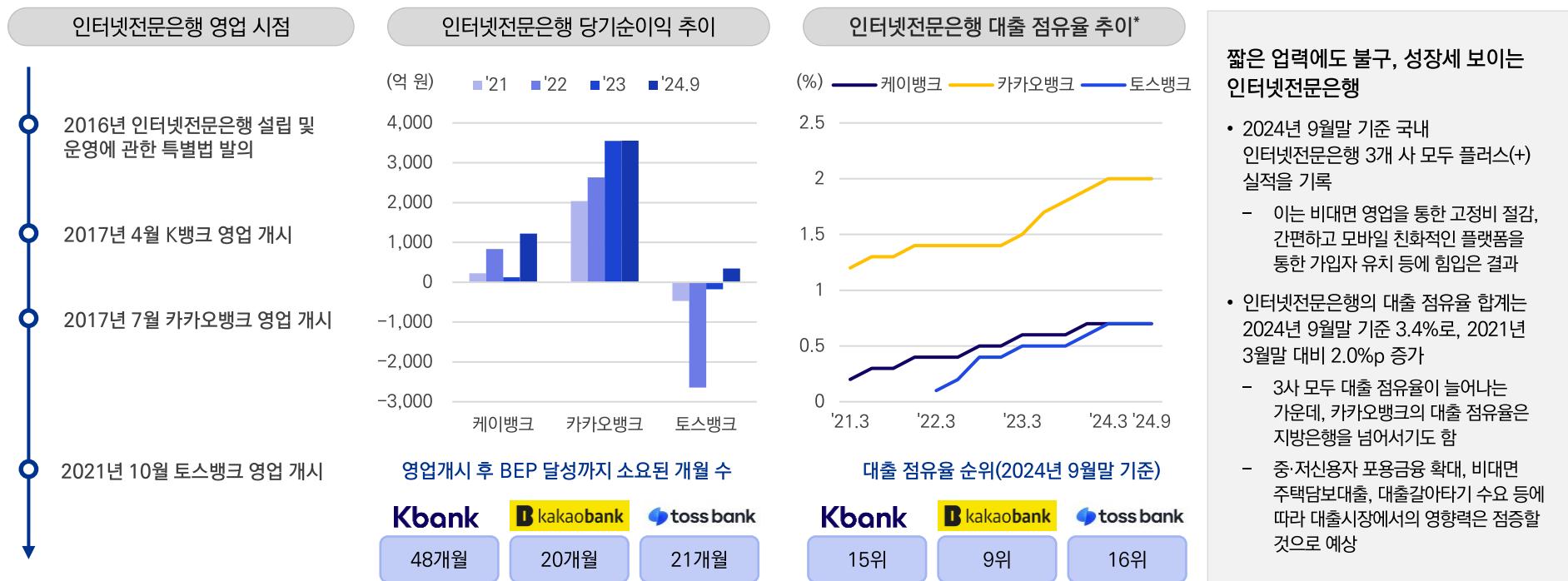
Source: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24.11.29),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 성과**
- 1) 이용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
    - 은행권 전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편의성 개선 경쟁을 촉발하여 소비자 만족도 증대
  - 2) 금융부담 경감
    - 무점포 영업 등 유지비용 절감을 통해 각종 수수료 경감 노력 경주
  - 3) 대출공급 저변 확대
    - 중저신용자 등에 대한 대출공급 확대 지속 추진 중
- 보완 과제**
- 1) 자금조달의 안정성 확보
    - 기존 3社는 대주주 재직 이슈, 자금지원 여력 부족 등으로 자금확보에 제약이 발생하기도 함
  - 2)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제고
    -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계획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아 금융당국과 함께 취급계획을 마련·이행 중
    - 충분하지 않은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로 부실확대 등의 문제가 제기

## ISSUE 3. 제4인터넷전문은행, 금융 지형 변화의 핵심이 될 것인가 (2/4)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기존 은행 대비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는 모습.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확대에는 상당 부분 기여했으나 전반적인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상존

###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Source: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언론보도 종합

Note: \*원화 가계대출 및 원화 기업대출 기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8개 은행 대상

## ISSUE 3. 제4인터넷전문은행, 금융 지형 변화의 핵심이 될 것인가 (3/4)

2023년 7월 금융당국은 은행업 전반의 경쟁도 제고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메기효과 등을 위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방안’을 발표. 2024년 11월에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며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실현가능성을 강조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기본 방향	종점 심사기준	종전 심사 및 평가	보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 평가</li> <li>포용금융(Inclusion)에 기반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종점 심사</li> </ul> <p>(1)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과 연속성 유지  (2) 인터넷전문은행 3社 성과 등 감안하여 심사기준 보완  (3)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의 포용성 평가 강화</p>	가. 자금조달의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최저 자본금(250억 원) 충족 여부 심사, ② 추가 자본조달계획 및 단기간 유동성 위기 발생 대응계획 평가, ③ 추정재무제표 기반 경영건전성기준 충족 여부 평가</li> <li>- 납입확인서만으로 실제 자금소요 발생 시 계획대로 이행여부가 불확실한 문제</li> <li>- 디지털 뱅크런 위험 현실화로 은행의 충분한 건전성·유동성 확보의 중요성 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3社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하여 충분한 자본력과 대주주로부터의 원활한 추가 자금조달을 통한 안정적 시장 안착 가능성 중점 심사</li> </ul>
	나. 사업계획의 혁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ICT 융합의 촉진 가능성과 혁신적 상품·서비스 제공 여부를 심사</li> <li>- 기존 3社 모두 중저신용자-금융이력 미보유자 대출확대를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제시했으나 차별성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금융권의 상품·서비스 공급상 한계가 있는 분야에서 금융관행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 평가</li> </ul>
	다. 사업계획의 포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취지 등 감안 시 종전 포용성 관련 평가 항목은 유지할 필요. 중소기업 신용대출시장 경쟁압력 하락, 지역기업 자금증개기능 활성화 등도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서민금융지원, 중금리대출, 지역금융 기여 등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제공 여부 평가</li> </ul>
	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저신용자 대출계획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고, 대안신용 평가 모형은 실제 예상대로 구현되지 못한 측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실제 이행담보를 위해 인가조건 부과</li> </ul>

Source: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24.11.29),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 ISSUE 3. 제4인터넷전문은행, 금융 지형 변화의 핵심이 될 것인가 (4/4)

2025년 1월 현재 6개의 컨소시엄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가운데, 각 컨소시엄은 AI, 소상공인 등 특화 기술 또는 타깃을 중점으로 두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말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르면 6월 내 제4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계획 중임

###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참여 컨소시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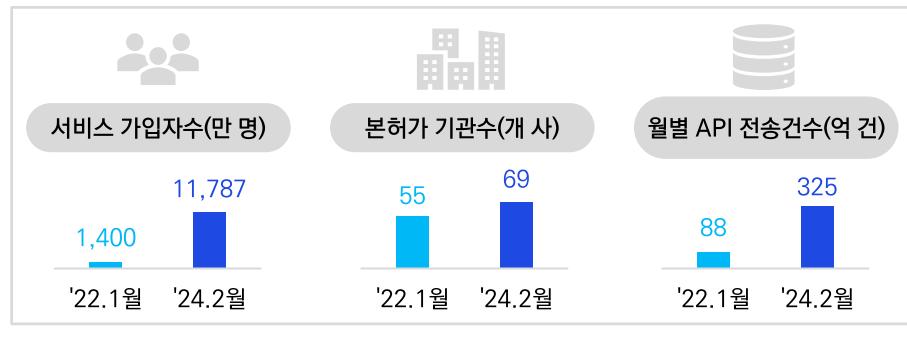
구분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
핵심 키워드(방향성)	임베디드 뱅킹	소상공인	(생성형) AI	소기업·소상공인	농업인	소상공인·해외동포
주요 추진 기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더존비즈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신용데이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렌딧</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소뱅크 설립 준비위원회(35개 소상공인 및 소기업단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MZ뱅크 추진 연합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도뱅크 추진위원회</li> </ul>
컨소시엄 구성	금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한은행</li> <li>NH농협은행(검토)</li> <li>DB손해보험(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은행</li> <li>우리카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해상</li> <li>IBK기업은행(검토)</li> </ul>	-	-
	비금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더존비즈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신용데이터</li> <li>아이티센그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렌딧</li> <li>루닛</li> <li>트래블월렛</li> <li>서비스안빌런스</li> <li>네이버클라우드</li> <li>현대백화점</li> <li>대교</li> <li>MDM플러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윙크스톤파트너스</li> <li>아이퀘스트</li> <li>펀딩플레이</li> <li>케이티엔에프 등 ICT 기업 11개 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농업유통법인중 앙연합회</li> <li>한국생명농업경영체 연합회</li> <li>농업회사법인</li> <li>아름다운사람들</li> <li>한국금융투자협동조합 등</li> </ul>

Source: 한국핀테크지원센터·삼정KPMG(2024.12), '2024 한국 핀테크 동향 보고서', 언론보도 종합

## ISSUE 4. 금융 마이데이터 2.0, 질적 성장·차별화 통한 경쟁력 제고 (1/3)

2024년 2월 기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는 서비스 가입자수 1.2억 명(중복가입 포함), 본허가 기관수 69개 사, API 전송건수 325억 건에 달하며 다양한 서비스에서 활발히 활용 중임. 이용자들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금융 자산과 부채, 지출 정보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현황



- 대환대출**
  - 15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참여, 기준 대출내역 조회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 대출이동 차주수: 신용 147,365명, 주담대 17,933명, 전세 5,980명 (2024년 3월 31일 기준)
-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 11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참여
  - 자동차보험 약 18,218여건 체결, 용종보험 165여건 체결 (2024년 3월 27일 기준)
- 신용점수 올리기**
  - 마이데이터 정보를 CB사에 제공, 신용점수 올리기에 활용
  - 금융마이데이터(통신비), 공공마이데이터(건강보험 납부내역, 소득증명원 등)

Source: 금융위원회(2024.4.4), '국민의 자산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을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 마이데이터 및 관련 서비스

금융데이터	융합데이터
초개인화 자산관리	건강·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애주기별 재무관리</li> <li>신파일러, 시니어용 특화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검진 헬스케어 보험관리</li> <li>기대수명에 따른 자산관리</li> </ul>
금융상품 추천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금/적금상품, 대출상품</li> <li>보험상품, 연금상품, 외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세조회, 내집마련대출</li> <li>부동산매물정보, 세금</li> </ul>
금융생활 도우미	쇼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계부, 영수증, 정부지원금</li> <li>카드포인트, 연말정산, 보험청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비패턴분석, 여행자보험</li> <li>통신+위치+결제정보, IoT</li> </ul>
금융투자 관리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스크관리, 로보어드바이저</li> <li>AI 투자일임, 투자 컨설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물 및 시세정보, 거래마켓</li> <li>신차/중고차구매대출</li> </ul>
금융데이터 관리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신용점수관리</li> <li>신용평가모형 고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권분석, 사업자대출, POS</li> <li>소상공인경영관리</li> </ul>

Source: 한국금융연구원(2024.11.27), '금융 마이데이터 2.0 시대 국내 금융회사의 과제' 재인용

## ISSUE 4. 금융 마이데이터 2.0, 질적 성장·차별화 통한 경쟁력 제고 (2/3)

금융 마이데이터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이용자 거래내역 제공, 서비스 확장 제약, 이용자 불편함, 정보유출 우려 등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2024년 4월 'マイ데이터 2.0' 추진 방안이 발표. 이어 2024년 9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발표와 「マイ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루어짐

### 금융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구분	현행	개선
1. 마이데이터 서비스 접근성 확대	(1)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마이데이터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프라인 지점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불가</li> </ul>
	(2) 마이데이터 전송요구 동의 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기입상품목록 조회) → 2단계(상세정보 요구별 동의서 작성 및 인증(2회))</li> </ul>
2. 마이데이터 서비스 품질 향상	(1) 마이데이터 물품구매 정보내역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 결제정보의 품질 저하</li> </ul>
	(2) 마이데이터를 통한 미사용 계좌 해지·잔고 이전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조회만 가능</li> </ul>
3. 마이데이터 보안 강화	(1) 미접속 마이데이터에 대한 정보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가입 후 장기간 미접속하는 경우도 정기적 전송을 통한 데이터 누적</li> </ul>
	(2) 제3자 정보제공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 제3자 정보제공 내역 관리의 어려움</li> </ul>
4. 맞춤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1) 마이데이터 정보 결합 활용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명확한 결합 기준이 없어 결합 및 분석을 통한 활용이 사실상 제한</li> </ul>
	(2) 정기적 전송 중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정기적 전송 중심의 마이데이터 사업 운영(과금 대상 X) → 과도한 정보 전송 트래픽 발생, 건전한 과금 구조 왜곡</li> </ul>

Source: 금융위원회(2024.4.4), '금융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 종합 금융플랫폼

더 많은 정보, 높은 보안 수준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바탕으로 전금융업권 플랫폼으로 성장

#### 안심 데이터 생태계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강화를 바탕으로 마이데이터의 신뢰 기반 마련

#### 혁신 서비스 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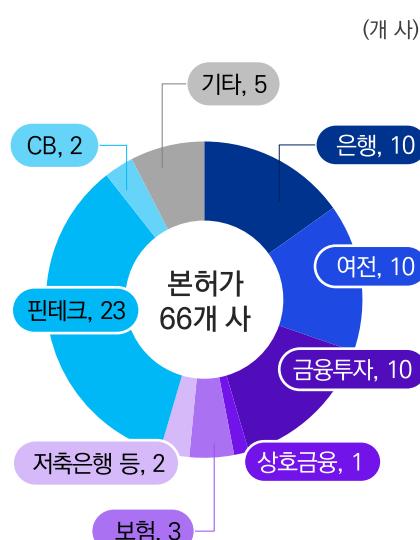
정보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유도

## ISSUE 4. 금융 마이데이터 2.0, 질적 성장·차별화 통한 경쟁력 제고 (3/3)

금융 마이데이터 2.0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데이터 가치 제고, 수익 창출 기회 확대와 더불어 이용자 편의성 증진 등이 기대됨. 한편 마이데이터 수익 모델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마이데이터 과금액이 늘어나 비용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금융 마이데이터 2.0 환경하에서 관련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

###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 및 금융 마이데이터 2.0의 영향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협회 현황\*



#### 금융 마이데이터 2.0의 영향

##### 1.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의 확대

- 정보제공 범위 확대에 따라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유한 빅데이터의 가치 제고 기대
- AI 학습용 데이터 가치 제고로 AI 성능이 개선되고 대출심사나 카드 한도심사가 정교해지는 등 서비스 개선과 마케팅 활용도 증가가 예상

##### 2.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범위 확대 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 창출 기회 확대 전망
- 마이데이터 영업의 오프라인 채널 허용으로 점포를 운영 중인 금융회사들의 수혜가 예상
- 마이데이터 정보와 기존 고객정보의 결합 기준을 명확화하는 조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의 기존 고객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3. 이용자 편의성 제고와 개인정보의 보호

- 동의 절차 간소화, 청소년 이용 개선 등 이용자의 편의성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입자 활동성이 떨어지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가입자 수는 감소할 여지
- 1년간 미접속 이용자 데이터 삭제 조치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낮추고 사업자의 데이터 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

#### [참고] 마이데이터 과금 동향

##### 마이데이터 과금액



- 2024년 7월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과금이 시작
- 2023년 282억 원에서 2024년 328억 원으로 46억 원 증가
- 마이데이터 수익 모델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가중
  - 중소형 사업자의 자격 철회 가능성 이미 2024년 중 3개사(에이치엔알, 디셈버앤킴퍼니, 십일번가) 마이데이터 사업 철회 신고
  - 금융 마이데이터 2.0으로 영업 활성화가 예상되나 금융사, 빅테크 외 사업자의 수익 기반 확대가 중요

Source: 신용정보협회, 한국금융연구원(2024.11.27), '금융 마이데이터 2.0 시대 국내 금융회사의 과제' 재구성, 언론보도 종합

Note: 2025년 1월 17일 기준

## ISSUE 5. 다시 한 번 기지개 켜는 디지털자산 (1/4)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으며,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 추진 계획을 발표.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과 2025년 1월 제1, 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등을 논의하기 시작한 가운데, 가상자산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 규제 마련이 기대

###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가상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시장 관련 논의에 착수한 금융위원회

####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 [주요 논의 내용]

- 가상자산 규율 논의 시 고려할 사항
  - 가상자산 관련 규율 정립은 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민·관 협업을 통한 논의 지속 필요
  - 가상자산의 특성(초국경성, 기술혁신성, 전통 금융시장과의 상호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리스크 전이 차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향후 논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
  -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원 개선 문제 등이 제시
  -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점점, 스테이블 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도 논의할 예정
- 법인 실명계좌 발급 이슈
  -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의 산업 전반에서의 활용도가 확대되고 주요국에서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 추세가 나타나는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 등도 고려할 필요

##### [참고] 금융위원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가상자산 관련 사항

-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
-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2단계법」 추진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 추가(특금법 개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를 개선, 첨단 포렌식 장비 도입 등 불공정행위 조사 고도화

####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 [논의 배경]

-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모습
- 가상자산 관련 규율 정립은 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민·관 협업을 통한 논의 지속 필요
- 가상자산의 특성(초국경성, 기술혁신성, 전통 금융시장과의 상호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리스크 전이 차단'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논의 배경]

-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중심으로 논의
  - 가상자산 매매·증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함하는 해외 입법례 등 점검
  -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의 필요성 지적
- 가상자산거래: 투명한 상장·공시제도 마련이 이용자 보호의 핵심 요소임에 공감
  - '거래지원(상장)'의 이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기공시, 수시공시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이 제기
- 스테이블 코인 규율방안: 글로벌 동향 및 각국 규제정립 상황 등 점검
  -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 대해 준비자산의 엄격한 관리의무 부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상환청구권 명시적 보장 등 최근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봄

##### [향후 계획]

- 관계기관 TF·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과제별 세부 내용 검토 착수 → 실무 검토 완료 과제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 마련 계획

Source: 금융위원회(2024.11.6),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금융위원회(2025.1.8), '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 금융위원회(2025.1.15),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ISSUE 5. 다시 한 번 기지개 켜는 디지털자산 (2/4)

금융위원회는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2025년 상반기 현금화 목적의 매도 거래 허용, 2025년 하반기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 시범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추진하는 로드맵을 발표. 이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수요의 해외 이탈, 블록체인 산업 투자 기피 분위기 등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

###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시장 참여 추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 [주요 논의 내용]

-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시장 과열 우려에 따라 2017년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옴
  -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해외 주요국들의 법인 시장 참여를 폭넓게 허용하는 점,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
  - 이에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마련
-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지원: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하여 업계 자정 노력 필요
  - 신규 거래지원 직후 가격 급변동(상장임) 현상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유통량을 확보,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준 강화, 거래지원 심의절차 내실화 방안 등 논의
- 토큰증권 제도정비 방향: 신속한 정비를 위해 관련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
  - 현재 국회에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토큰증권 제도화 시 증권발행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으로 발행·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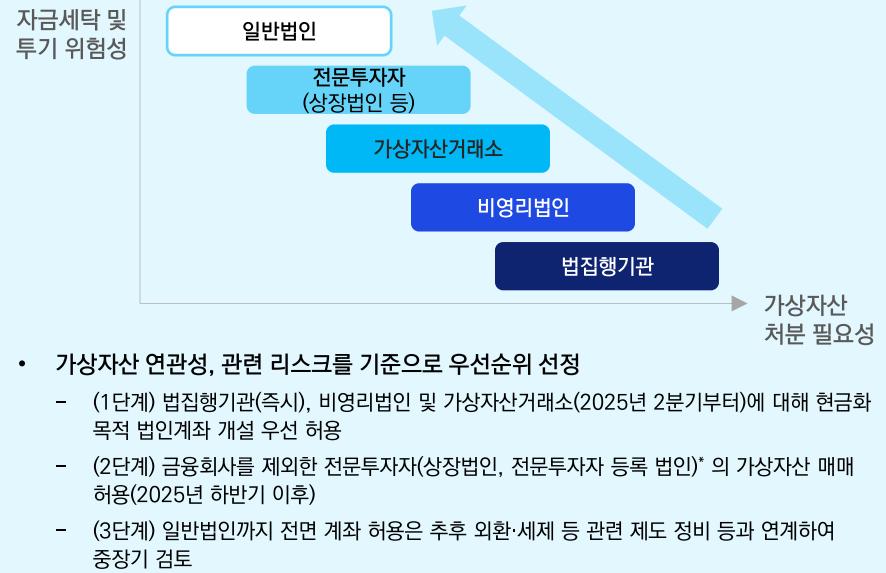
####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매도·매매 가이드라인」 등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원활한 법인 시장 참여를 지원해 나갈 예정

Source: 금융위원회(2025.2.14),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추진합니다」

Note: \*약 3,500여 개로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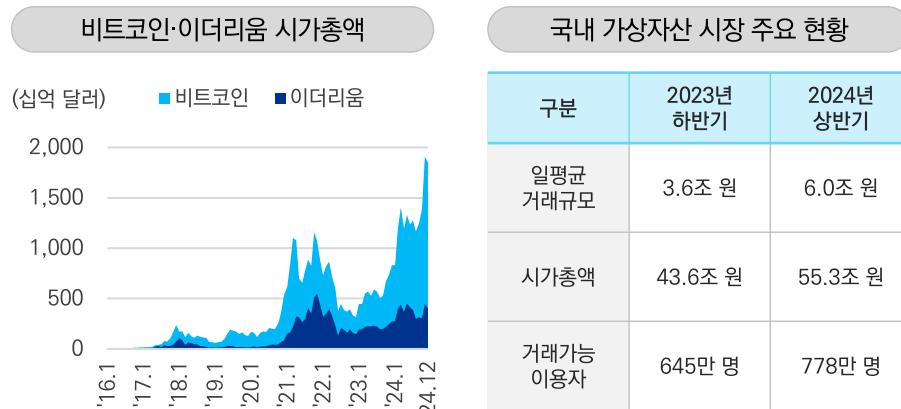
####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 ISSUE 5. 다시 한 번 기지개 켜는 디지털자산 (3/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비트코인 반감기 등으로 국내외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신고가를 돌파하는 등 親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가 고조된 바 있으며, 가상자산 수요가 ‘개인→기업·기관→국가’로 확대되는 양상

### 가상자산 시가총액 추이 및 국내 가상자산 시장 주요 현황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2024년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하며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 받는 전환점으로 인식
- 2024년 4월 비트코인 채굴 반감기,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 등을 거쳐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속 상승
- 국내에서도 글로벌 요인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년 7월 시행) 등이 맞물리며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세. 2024년 상반기 기준 일평균 거래규모 6.0조 원을 기록

Source: CoinMarketCap, 금융위원회(2024.10.31), “24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가상자산 관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고,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

#### 1. 親디지털자산 인사 배치

-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폴 앤тки스(Paul Atkins)를 지명. 前 SEC 위원인 폴 앤тки스는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비판하면서 시장 주도 성장을 강조
- ‘AI·암호화폐 차르’에 前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를 임명. 금융자산의 디지털화를 예견하며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표

#### 2. 가상자산 패권 확보 위한 움직임

-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검토할 실무그룹 신설과 미국 국부펀드 설립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특히 국부펀드에서 비트코인 매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가상화폐 실무그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서 제출 시 비트코인을 최대 100만 개 매입하여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내용이 담길지에 대한 관심 또한 점증
- 한편 SEC는 회계 규정 SAB 121\* 지침을 철회하여 미국 내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전망. 최근 SEC의 리플에 대한 항소 철회 가능성이 제기되며 리플의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음

#### 3.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

-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 법안 등을 통한 디지털자산 제도 명확화, 미 연방준비제도(Fed)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디지털자산 대통령 자문위원회 설립 등이 추진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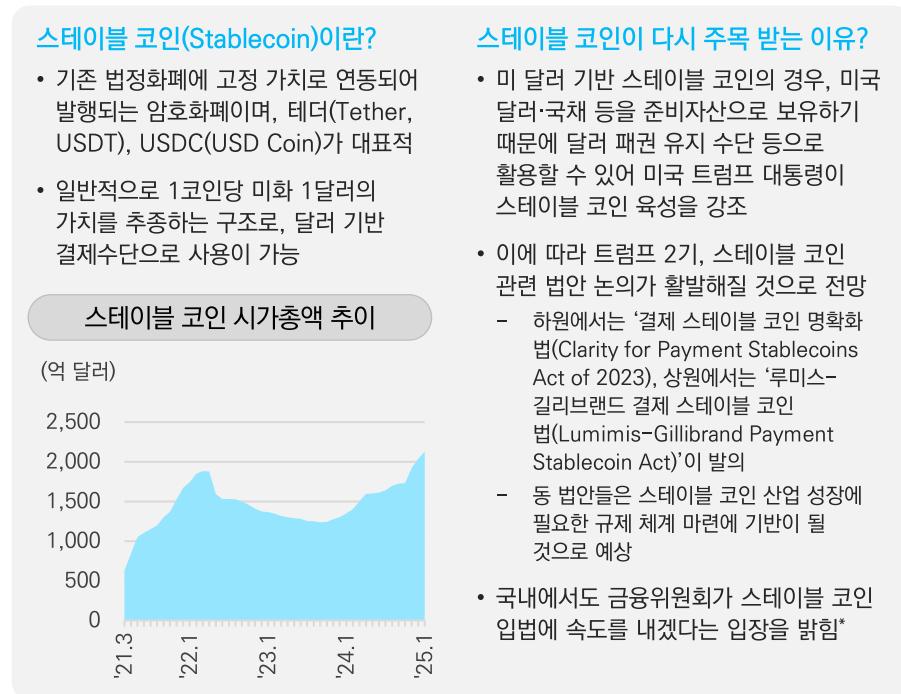
Source: 언론보도 종합

Note: \*SAB 121은 2022년 3월 SEC가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지침으로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회사는 자체 대차 대조표에 암호화폐를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ISSUE 5. 다시 한 번 기지개 켜는 디지털자산 (4/4)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지원에 적극적인 방침이 이어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주목 받고 있음. 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자국 통화를 대체하는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페이팔, 비자 등 글로벌 지급결제기업 또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거래에 대응하는 모습

### 성장 가능성 주목 받는 스테이블 코인



### 스테이블 코인이 다시 주목 받는 이유?

- 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미국 달러·국채 등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달러 패권 유지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 육성을 강조
-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하원에서는 '결제 스테이블 코인 명확화 법(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of 2023)', 상원에서는 '루미스-길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 코인 법(Lumiris-Gillibrand Payment Stablecoin Act)'이 발의
  - 동 법안들은 스테이블 코인 산업 성장에 필요한 규제 체계 마련에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
-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 코인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힘\*

###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와 주요 기업의 행보

#### 남미·신흥국의 스테이블 코인 이용 증가

- 자국 통화 가치 하락과 은행망 자체 불안정성 등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용 급증
- Visa의 조사<sup>1</sup>에 따르면 브라질, 터키, 나이지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69%가 통화 대체 수단으로, 39%가 상품 및 서비스 결제와 국경 간 송금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고 답변

####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비트코인 거래 비중<sup>2</sup>



#### 주요 지급결제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행보

기업	주요 대응
PayPal	2023년 자체 스테이블 코인 'PYUSD' 발행
stripe	2024년 10월 스테이블 코인 거래 특화 플랫폼 'Bridge'를 인수하여 결제 시스템 구축 중
VISA	2024년 10월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돋는 플랫폼 'Visa Tokenized Asset Platform'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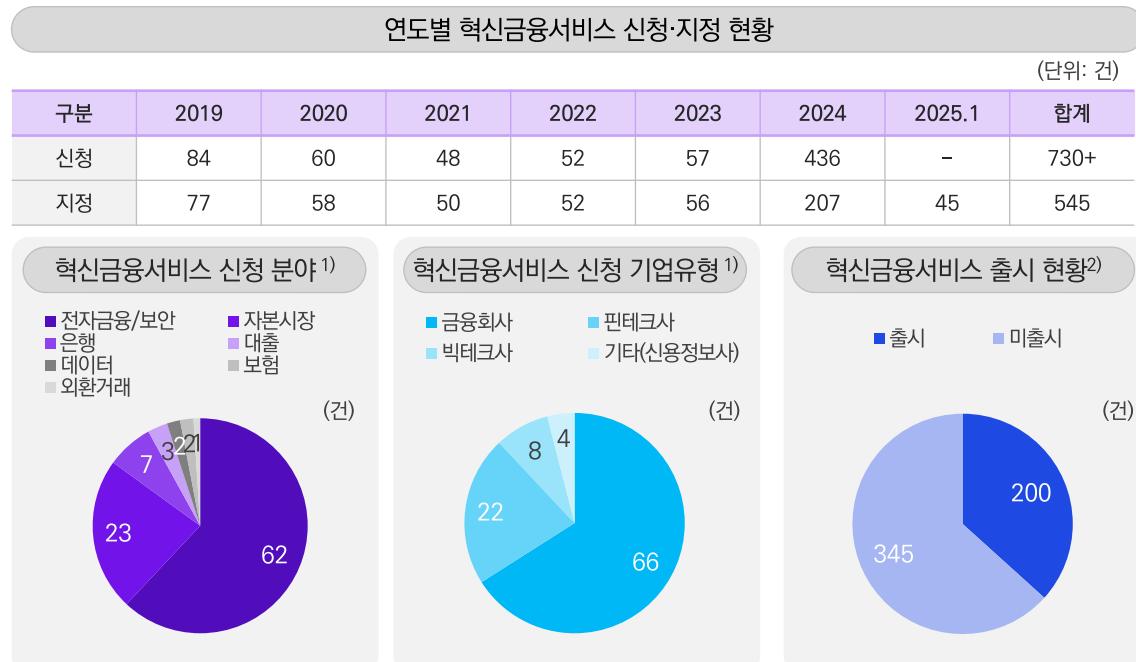
Source: Visa(2024.9), 'Stablecoins: The Emerging Market Story', Chainalysis, 언론보도 종합

Note: 1) 브라질, 터키, 나이지리아, 인도, 인도네시아의 성인 각 500명씩을 대상으로 조사, 2) 2023년 6월~2024년 6월 기준

## ISSUE 6. 혁신의 통로로 자리매김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1/4)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2019년 4월 도입 이후 2025년 1월까지 54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금융산업 내 활력을 불어넣는 동력으로 자리매김. 핀테크 기업의 혁신사업 기회 제공, 실제 서비스 출시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는 비욘드 샌드박스(Beyond SANDBOX) 등 핀테크 스케일업 지원 방안을 발표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현황



Source: 금융위원회(2025.1.8), “24년 한 해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436건 접수”, 금융위원회(2025.1.15) “혁신금융서비스 45건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Note: 1) 2024년 4분기 신청건수 100건 기준,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545건 기준

###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정책방향

#### 비욘드 샌드박스(Beyond SANDBOX) 등 핀테크 스케일업 지원

구분	주요 내용
디지털 전환, AI 활용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법제도 전면 정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자금융제도의 유연화, 다양한 인증기술 포섭 등 자급서비스의 융합·혁신 가속화를 위한 제도개선</li> <li>② 新금융보안체계(자율보안-결과책임) 구축을 위해 디지털 금융보안법제 마련</li> <li>③ AI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등 AI 활용 활성화 지원</li> </ul>
비욘드 샌드박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혁신금융서비스의 초기 제도화 및 「K-스케일 박스(Scale Box)」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핀테크센터와 1:1 맞춤형 컨설팅, 필요시 인·허가 컨설팅과 해외 진출 지원</li> </ul> </li> <li>② 혁신적 샌드박스 최초 신청자에 대한 배타적 운영권 부여 추진</li> </ul>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된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 검토 및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단계법」 추진</li> <li>②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li> <li>③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를 개선</li> </ul>

Source: 금융위원회(2025.1.8), “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

## ISSUE 6. 혁신의 통로로 자리매김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2/4)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플랫폼을 통한 예금·대출품·보험상품 등의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허용되며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조각투자 및 해외 소수점 투자 서비스 등은 투자 저변 확대에 기여, 인증과 사기거래 방지 서비스 등이 디지털금융의 안정성 도모. 한편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금융서비스 등은 핀테크 신규 고객 확보 등에 도움이 될 전망

###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서비스명	예금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지정기업	뱅크샐러드, 씨비파이낸셜솔루션, 네이버파이낸셜, 신한은행, 삼성카드, 쿠콘 등
서비스 내용	고객의 금융거래 현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예·적금 상품을 맞춤형 추천
서비스명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지정기업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엔에이치엔페이코, 마이뱅크, 뱅크샐러드, SK플래닛 등
서비스 내용	다양한 대출상품의 금리, 한도 정보를 한눈에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
서비스명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지정기업	비바리퍼블리카, SK플래닛, NH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등
서비스 내용	핀테크사의 플랫폼을 통해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CM)을 비교 및 적합한 보험상품 추천. 자동차보험을 필두로 저축보험 등으로 확대
서비스명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조각투자, STO)
지정기업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뮤직카우, 한국거래소 등
서비스 내용	부동산, 음악 저작수익권 등을 신탁을 통해 수익증권화하여 플랫폼상에서 거래. 영업 개선을 위한 개별상품에 대한 광고 규제 완화
서비스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은행통장 간 연계 서비스
지정기업	네이버파이낸셜-우리/신한은행, 당근페이-하나은행, CJ올리브네트웍스-우리은행, 삼성카드-KB국민은행 등
서비스 내용	선불지급수단 사용 시,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제휴은행 통장에 보관 및 은행으로부터 보관 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 등
서비스명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
지정기업	신한카드·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국예탁결제원, 카카오페이증권 등
서비스 내용	증권사 거래시스템으로 미국 상장주식, ETF를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증권사 지원 서비스
서비스명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지정기업	신한카드, 더존비즈온, 현대카드, SK텔레콤 등
서비스 내용	신용카드사 가맹점정보 등에 기반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및 가치평가 서비스
서비스명	マイ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
지정기업	나이스평가정보 포함 31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서비스 내용	인증 한 번만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
서비스명	금융사기 의심거래 방지 서비스
지정기업	코리아크레딧뷰로, 금융결제원, SKT·KT·LG유플러스·나이스평가정보
서비스 내용	금융회사에 금융의심거래 분석 정보 제공 등
서비스명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금융서비스
지정기업 및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렌지스퀘어(前밸소프트)- 무인환전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불카드 발급 서비스</li> <li>• 한패스- 방한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li> </ul>

Source: 금융위원회(2024.3.29),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부터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까지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303개의 금융혁신을 만들다’,

## ISSUE 6. 혁신의 통로로 자리매김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3/4)

조직 내 인사·리스크 관리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금융사의 AI 활용은 확대되고 있으며, 자연어 처리와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가속화 예상. 국내 금융권에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한 금융 혁신에 노력하는 가운데 2024년 12월 생성형 AI 기반 금융권 10개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되면서 금융권 AI 서비스 경쟁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AI 활용에 따른 금융산업 내 변화

프론트 오피스 (고객, 영업마케팅, 상품 등)	AI-Powered Customer Service (고객 경험 혁신)	AI 챗봇, 가상비서
		AI 컨택 센터
		신원인식(얼굴, 음성)
미들 오피스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AI-Powered Insight & Action (인사이트 및 실행)	초개인화 서비스
		AI 기반 신용평가
		AI 기반 상품 개발
		AI 알고리즘 트레이딩
백 오피스 (계약관리, 심사, 운영 등)	AI-Powered Compliance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준수)	지능형 예측
		이상거래탐지(FDS)
		자금세탁방지(AML)
		AI 기반 품질관리(불완전판매 등)
AI 기반 리스크 관리(운영/시장/신용)	AI-Powered Operational Efficiency (운영 최적화)	AI 기반 리스크 관리(운영/시장/신용)
		AI 기반 심사(대출, 언더라이팅 등)
		AI 기반 디지털 결산
		지능형 서류 관리(계약관리 등)
합성 데이터	소프트웨어 코딩	합성 데이터
		소프트웨어 코딩

Source: 삼정KPMG AI 센터

### 금융권 생성형AI 활용 혁신서비스 지정

구분	신청 서비스명	주요 서비스 내용
은행	신한은행	생성형AI 기반 AI 은행원 • 자연어 기반 금융 상담 제공, 외국어 번역 제공 등
	생성형AI 투자 금융상담 Agent	• 자연어 기반 각종 뉴스요약, 과거 수익률 정보, 시장흐름 정보 등 제공
	KB은행	생성형AI 금융상담 Agent • 고객 질의 시 고객 친화적 대화 및 상담 제공 등
	NH은행	생성형AI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 외국인 고객을 위한 AI은행원, 고령층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증권	카카오뱅크	대화형 금융 계산기 • 자연어 기반 금융상품 관련 이자·환율 등 계산
	NH증권	생성형AI 대고객 시황정보 서비스 • 맞춤형 시황 정보 실시간 요약 제공
	KB증권	AI 통합금융플랫폼 캐비 • 환전, 자산관리 등 대화형 서비스 제공
	교보생명	보장분석 AI 서포터 • 설계사에게 고객의 보장분석보고서에 기반한 맞춤형 설명 스크립트 제공 등
보험	한화생명	생성형AI 활용 고객 맞춤형 화법 생성 및 가상 대화 훈련 솔루션 • 설계사에게 최신 뉴스 등을 통한 세일즈 화법 제공
	KB카드	생성형AI 활용 모두의 카드생활 메이트 • 고객 상황에 맞는 카드상품 비교, 발급 등 대화형 금융서비스 제공

Source: 금융위원회(2024.12.9),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격화 됩니다.’

## ISSUE 6. 혁신의 통로로 자리매김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4/4)

배달앱(신한–땡겨요), 알뜰폰(KB국민은행–KB 리브모바일), 공동대출(광주은행, 토스뱅크) 등이 대표적인 금융권 혁신금융서비스. 최근 들어 AI, 클라우드 활용 서비스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의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CBDC와 같은 금융·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스템 테스트에도 적극 참여

###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관련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체명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서비스명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sup>1</sup>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서비스 주요 내용	지정 은행(7개 사)은 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 공동 발표)이 2023년 10월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에 따라 구축 예정인 CBDC 시스템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에게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li> <li>•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sup>2</sup>된 자금수단(이하 ‘예금 토큰’)을 발행</li> <li>• 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이용해 물품·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li> </ul>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활용한 실거래 테스트 구성(예시)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 기능 적용 시 기대 효과		
	As-Is	To-Be
데이터 수집·검증 등의 자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데이터 수집과 검증 등 정합성 수동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래밍 기능 이용한 정합성 검증 자동화</li> </ul>
저비용, 실시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중개기관(플랫폼)을 통한 발행, 유통, 정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개기관, 수수료 없는 실시간 지급</li> </ul>

Source: 금융위원회(2024.10.30),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23.11.23),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

Note: 1)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2) 기존 자신을 분산원장기술 기반 플랫폼에서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 토큰(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될 수 있는 증표)으로 변환하는 과정, 3)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형 통화)

## ISSUE 7. 핀테크 기업의 약진 … 성과 창출과 해외진출 모색 (1/3)

‘핀테크’라는 개념이 국내에 등장한 지 10여 년 만에 대표적인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의 매출 성장세에 따라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또는 적자 폭 감소를 기록하며 재무적 성과 시현. 빅테크 등의 경우 플랫폼 효과 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며, 핀테크 기업 역시 비용 효율화 전략과 주력 사업 강화 등을 통해 흑자 전환을 도모 중

### 성과를 입증하는 핀테크·빅테크 기업



#### 빅테크 기업의 본격적인 도약세

- 네이버 파이낸셜은 2019년 11월 네이버에서 분사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확장 등을 통해 매출과 순익 성장
- 검색부터 쇼핑까지 연결되는 간편결제를 시작으로 빠른 정산, 후불결제 등의 서비스 및 온라인 사업자대출, 금융사 협업 제휴통장, 부동산/자동차 연계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성장
- 비바리퍼블리카는 2024년 3분기 연결 당기순이익은 39억 원으로 분기 기준 흑자 전환
- 2013년 창립 이후 분기 기준 첫 흑자 전환으로 토스의 광고, 간편결제(토스페이), 대출중개 등 토스 서비스의 고른 성장 및 계열사 및 관계사들의 실적 호조에 기인
- 카카오페이는 매출 성장이 지속 증가세로 금융자회사 탑라인 성장을 통한 점진적 손익 구조 개선
- 2024년 4분기 티몬·위메프 영향 등 제외시 BEP 근접 및 카카오페이증권 첫 분기 흑자 기록 등

#### 핀테크 기업, 체질개선을 도모하며 지속가능한 수익구조 확보를 위한 노력

- 뱅크샐러드는 대화대출 서비스와 광고 수익 등 기타 매출에 힘입어 매출은 2021년 34억 원을 기점으로 2024년 3분기 누적 133억 원까지 성장, 2024년 11월 ‘월 기준 손익분기점(BEP)’을 달성
- 대출비교 서비스 기업 핀다는 대출중개 서비스에 힘입어 2024년 7·8월 월간 흑자 전환에 이어 2024년 4분기 2.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손익분기점 달성
- 광고선전비 등의 비용 절감, 마케팅 전략 정교화 등을 통한 락인 전략 등이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
- P2P 기업 대일리펀딩, 구독형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로 이용하던 전자계약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내재화하는 등 비용 절감을 바탕으로 2024년 첫 연간 흑자 기대
- 직전 분기 대비 2024년 1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85%, 15% 증가

Source: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각 사 실적 IR 보고서, 언론보도 종합

Note: 1) 비바리퍼블리카 및 카카오페이는 연결 기준이며 뱅크샐러드는 검토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2) 카카오페이의 2024년 3분기 당기순이익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일회성 손실이 반영되며 당기순손실 기록

## ISSUE 7. 핀테크 기업의 약진 … 성과 창출과 해외진출 모색 (2/3)

국내 IPO 시장이 부진 가운데에서도 주요 핀테크 기업들이 수익 개선세와 성장성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기업공개(IPO)를 도전하고 있음. 핀테크 기업의 IPO 성공 시 핀테크 시장에 대한 투자자 관심 및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 확대 전망

### 기업공개(IPO)에 나서며 핀테크 산업 도약 전망

#### '비바리퍼블리카' 나스닥 IPO 도전

- 유니콘 핀테크 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2024년 2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국내 상장을 분지하였으나, 11월 미국 상장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IPO 변경 계획을 전달
- 향후 5년 내 해외 사용자 비중을 50%로 늘린다는 비전을 제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토스의 기업가치를 10~20조 원 수준으로 예상
- 해외 주관사 선정, 기존 투자자 간 이해관계 조율 등을 통해 최적 방안이 도출될 전망

#### 코스닥 IPO 준비하는 '뱅크샐러드'

- 2025년 1월 IPO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IPO 준비에 돌입
- 2024년 들어 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월 기준 손익분기점 달성을 발표
- 뱅크샐러드는 기술특례상장이 아닌 일반상장을 선택함에 따라 향후 수익성 개선이 성공적인 IPO를 달성하는데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핀테크 기반 기술 전문기업 '더즌', 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 2017년 11월에 설립된 더즌은 금융네트워크를 기반으로 B2B 비즈니스를 확장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공동주택관리 관련 데이터 사업 등을 영위
- 매출과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 등 탄탄한 펀더멘탈, 카카오페이와의 협력 관계 등이 강점으로 평가. 크로스 보더 결제 및 정산 서비스 구축을 위한 Ayoconnect과 제휴 등 글로벌 확장 전략 모색 중
-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2025년 3월 내 상장완료 추진 중

#### 보험비교·추천플랫폼 인슈어테크 '해빗팩토리', 외형 확장하며 IPO 도전

- マイ데이터 기반 해빗팩토리는 보험 비교·추천 애플리케이션(앱) 시그널플래너 운영에 이어 인공지능(AI) 기반 상담프로세스 '시그널워크플로우' B2B 판매 등 외형 확장 중
- '넥스트 파운데이션(Next Foundation)' 부서를 설립하고 연내 디지털보험사 출범을 위한 초석 마련 중
- 2025년 국내 주식 시장 상장을 목표로 IPO에 나설 전망. IPO 성공 시 사업규모 확대 및 기존 서비스라인 강화에 중점적으로 활용될 예정

#### 진격의 '빗썸', IPO로 전환점 맞이 기대

- 2023년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상장 준비
- 2025년부터 실명계좌 제휴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하여 점유율 확대에 노력 중임
- 사업다각화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재무건전성 제고가 필요한 한편, 지배구조와 사법 리스크는 IPO 추진 과정에서 주요 난항 요소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 인도인을 사로잡은 '밸런스히어로', 한국거래소 IPO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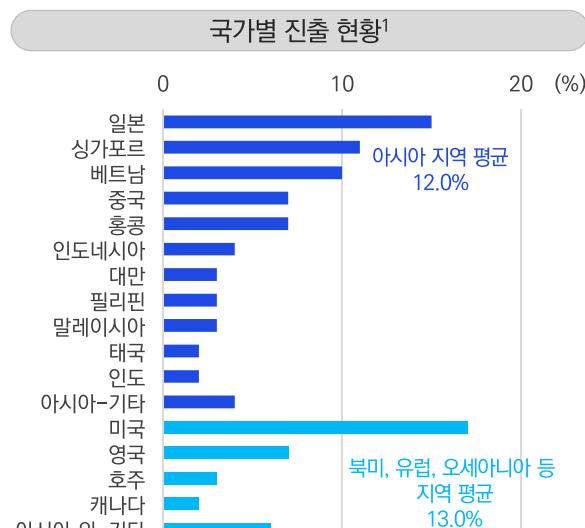
- 2014년 설립한 밸런스 히어로는 인도에서 소액 대출 플랫폼 '트루밸런스'를 운영, 약 1억 명의 사용자 확보. '24년 매출 1,442억 원(전년 845억 원 대비 70% 증가), 영업이익 380억 원(전년 160억 원 대비 137% 증가)
- 상장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을 선정.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위한 절차 돌입
- 인도 핀테크 시장의 잠재력과 사업모델(BM)의 안정성에 대한 심사 당국과 국내 투자자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

Source: 언론보도 종합

## ISSUE 7. 핀테크 기업의 약진 … 성과 창출과 해외진출 모색 (3/3)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안착한 핀테크 서비스 및 인에이블러(Enabler) 기업들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미주, 유럽 등 다양한 지역으로 진출 중인 모습. 현지 기업과의 협업, 라이선스 획득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익 다변화와 글로벌화를 통한 스케일업(Scale-up)이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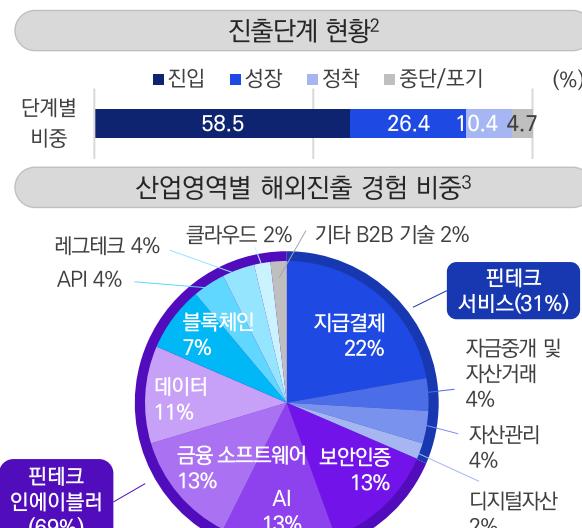
###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 2023년 기준 국내 핀테크 54개 사가 해외시장에 진출, 미국(17개), 일본(15개), 싱가포르(11개), 베트남(10개) 순임
- 106건의 해외진출 경험 중 중단/포기 이유로는 투자 여력 부족, 수익성 부족, 규제 등이 존재
- 산업영역별로는 핀테크 인에이블러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기술 수출 형태임에 따라 현지화 등의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어 핀테크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경험 비중(31%)보다 높게 나타남(69%)

Source: 한국핀테크지원센터(2024), '2023 핀테크 산업 현황조사'

Note: 1) N=54, 복수응답, 2) N=106, 3) N=54, 해외진출 경험 기업 대상



###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주요 사례

기업명	영역	해외진출 주요 현황
카카오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년 11월 태국시암은행지주사 SCBX와 태국중앙은행에 가상은행 인가신청서 제출, 앱 개발 추진</li> <li>태국 SCBX, 중국 위뱅크와 컨소시엄 구축, 동남아시아 입지 강화 계획</li> </ul>
네이버파이낸셜	지급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C카드, 유니온페이 등과 협력하여 2023년 12월 기준 65개국에서 QR결제 서비스 이용 가능</li> </ul>
해빗팩토리	인슈어 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 미국 법인 설립, 미국 3개 주에서 모기지 전문은행(Lender) 라이선스 획득</li> <li>미국 법인에서 AI 기반 주택 담보 대출 서비스 'Loaning.ai' 제공</li> </ul>
핀투비	자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지 금융기관 대상 공급망 금융 플랫폼 제공</li> <li>2019년 베트남, 2021년 인도네시아에 이은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li> </ul>
퀀팃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데이터를 활용한 투자 및 포트폴리오 솔루션 제공</li> <li>MOU 활용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진출</li> </ul>
아톤	보안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에서 쌓은 모바일 OTP* 경험에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 접목</li> <li>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모리셔스 등 6개국 진출</li> </ul>

Source: 한국핀테크지원센터(2024.12), '2024 한국 핀테크 동향 보고서', 언론보도 종합

Note: 무작위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 보안 시스템(One-Time Password, OTP)

# Contents

I.	디지털금융의 발전과 확대	2
II.	2025년 눈여겨볼 디지털금융 주요 이슈	10
III.	결론 및 시사점	37

## Key Takeaways (1/3)

### 변곡점에 선 디지털금융

금융 소비자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체인증(Bio-metrics) 등의 기술 발전과 함께 다채로운 서비스가 탄생하며 디지털금융 또한 성숙 단계에 진입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등으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예상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금융 서비스의 비대면화도 심화
- 일례로 핀테크 사업 유형 중 지급결제 서비스의 경우 20% 가량을 차지하며 시장 점유가 고착화되는 양상
- 다만 보안인증, 데이터, AI 등 비즈니스 모델의 다각화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이용자들의 디지털금융 선호와 같은 환경 변화와 더불어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도모하는 핀테크 활성화 정책과 금융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이 맞물리며 디지털금융 생태계 기반이 마련되어 옴

- 정책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 플레이어들이 혁신적인 신규 서비스를 시장에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금융사뿐만 아니라 금융사 또한 동 제도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데이터 3법 통과,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발표 등 기존 금융사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는 노력
- 이와 동시에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마련과 같은 새로운 금융업의 제도화를 통한 안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 중임

디지털금융은 빠르게 발전·확산되어 왔으나 새로운 유형의 금융(연계) 서비스 등장, 신기술 활용 가속화 등으로 이전에 없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환경에 직면

-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에 이어 2024년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 금융업-비금융업 결합 서비스의 리스크가 부상
- 간편결제와 관련한 부정결제, 도난, 소액후불결제서비스의 다중채무 관리와 같은 이용자 보호, 건전성 문제 또한 대두
- AI가 빠른 속도로 산업 내 활용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편향성, 보안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 또한 점증하면서 윤리적 책임과 규제 준수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함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Key Takeaways (2/3)

### 디지털금융 주요 이슈 관련 플레이어들의 대응 방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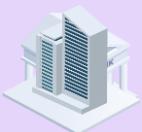
금융회사

- ✓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마이데이터 2.0, 망분리 등 제도, 정책 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규제 등으로 제한되었던 혁신적인 금융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며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 디지털 금융을 통한 금융서비스 경쟁력 제고 및 금융소비자 편의와 소비자 보호 등에 목표를 두며 중장기적으로 조직 내 디지털금융·AI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경영진의 의지와 거버넌스 확립 필요
- ✓ 단순 마케팅, 판매 방식의 신기술 적용에서 벗어나, 자사 브랜체인과 금융업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전환 추진에 따른 효과를 측정·평가하는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 성과 지표) 전환 등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임
  - KPI는 MAU 확대가 아닌 디지털 채널을 통한 거래 규모, 고객 유지와 실제 활성화 정도, 디지털 채널별 사업단위/상품별 기여도, 데이터 품질 및 활용 지표, 직원의 디지털 역량 수준 등 자사 디지털·AI 전략과 연계되어 적용되어야 함
  - 프론트-미들-백 오피스의 특성과 전체 부서간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 구조와 KPI의 차이도 고려될 필요
- ✓ 마이데이터 2.0 등의 도입 등과 맞물려 온라인-오프라인 채널의 재정비와 연계, 자사 타깃 고객에 대한 분석과 금융서비스 오퍼링 역량 강화 등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 필요
- ✓ 2025년 단계적 가상자산 법인 원화 실명 계좌 허용, 토큰증권 관련 법안 통과, 2단계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하여 기존 금융시장의 변화와 관련 사업 모델과 수요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두적인 입지 확보를 위한 사업 설계와 리스크 관리 방안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 자사의 강점과 연계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금융사업자와의 제휴, 금융기술·AI 등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기업과의 제휴 등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넓히는 전략 필요
- ✓ 향후 클라우드, AI 관련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 역량 보유 인재 영입과 역량 제고를 위해 인력 구조 개편과 다양한 형태의 직원 교육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함
- ✓ 제3자와의 거래와 리스크 관리, 분석하는 데이터의 범위와 질, AI 적용 범위 확대와 물리적 망분리 등을 고려 시, 금융보안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의 금융 보안과 사이버 리스크 관리 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Key Takeaways (3/3)

### 디지털금융 주요 이슈 관련 플레이어들의 대응 방향은?



비금융회사

- ✓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자로서 안전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자발적 노력이 중요한 시점으로, 리스크 또는 사고 발생에 따른 규제 마련·강화에 따른 업종 등록과 자본금 요건 외 후속적으로 요구되는 내·외부 컴플라이언스를 철저히 모니터링할 필요
- ✓ 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및 임베디드 금융 등과 같은 기존 금융회사와의 협력 관계 설정·강화는 포스트 IPO 시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바, 비금융회사의 기술력과 인지도 강화 등을 통한 제휴를 모색할 필요 있음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런칭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서비스의 혁신성과 편익, 업무 자격 능력 등의 심사 요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필요 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 금융업 경쟁도 증가에 따라 수익 모델이 불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또는 정리, B2B(Business-to-Business)·B2G(Business-to-Government) 비즈니스 모델 개발, 니치마켓 발굴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 ✓ 핀테크 기업 등은 해외진출 시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경영권 인수 및 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자사 비즈니스 모델과 진출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와 지원 방안을 살펴볼 필요



정책당국

- ✓ 금융사와 비금융사가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지속 추구하기 위해서는 금융업권의 신기술 활용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디지털금융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 지속 추진될 가능함
- ✓ 임베디드 금융의 확산, 금융과 비금융의 빅블러 가속화, AI 경쟁력 등을 고려 시 감독당국은 혁신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한편, 금융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영위, 데이터 활용성 제고 등 혁신을 장려하는 규제 환경이 필요함
- ✓ EU와 가상자산 규제 제도 도입,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육성 방안 등을 고려 시, 토큰증권을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포괄적인 발행·유통, 시장 인프라에 대한 신속한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 시장 참가자의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등의 일관된 정책 추진 및 Grey Zone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 국내 소수 클라우드·보안업체 쏠림 현상과 디지털금융 소외 등과 더불어 AI 활용 시 비용 부담이 큰 핀테크 기업에 대한 데이터·AI 플랫폼 구축 등 지원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 금융회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점검하고 문제 개선을 지도하는 한편, 디지털금융 보안 제도 마련 및 정비를 통한 규율 근거·체계 마련이 필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Business Contacts

## 디지털금융·AI 서비스 전문팀

### Consulting Services

이동근  
전무  
T 02-2112-7587  
E tongkeunlee@kr.kpmg.com

김세호  
상무  
T 02-2112-7879  
E seihokim@kr.kpmg.com

황태영  
상무  
T 02-2112-0490  
E taeyounghwang@kr.kpmg.com

최종원  
상무  
T 02-2112-0713  
E jchoi16@kr.kpmg.com

최진영  
상무  
T 02-2112-6836  
E jinyoungchoi@kr.kpmg.com

### Audit

권영민  
금융산업리더, B&F1 본부장  
T 02-2112-0217  
E ykwon@kr.kpmg.com

최재범  
B&F2 본부장  
T 02-2112-0213  
E jaebgeomchoi@kr.kpmg.com

김진귀  
B&F3 본부장  
T 02-2112-0223  
E jinkwikim@kr.kpmg.com

석명기  
부대표  
T 02-2112-0415  
E mseok@kr.kpmg.com

신재준  
부대표  
T 02-2112-0205  
E jaeunshin@kr.kpmg.com

김민규  
부대표  
T 02-2112-0428  
E mingyukim@kr.kpmg.com

전용기  
전무  
T 02-2112-0556  
E yjeon@kr.kpmg.com

박철성  
전무  
T 02-2112-0437  
E chulsungpark@kr.kpmg.com

어경석  
전무  
T 02-2112-0497  
E keo@kr.kpmg.com

김왕문  
전무  
T 02-2112-7964  
E wangmoonkim@kr.kpmg.com

조정래  
전무  
T 02-2112-7525  
E jjoh@kr.kpmg.com

박우성  
전무  
T 02-2112-0193  
E woosungpark@kr.kpmg.com

복정수  
전무  
T 02-2112-0146  
E jbok@kr.kpmg.com

최재혁  
전무  
T 02-2112-0147  
E jaeheurkchoi@kr.kpmg.com

[home.kpmg.kr](http://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u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